



의안번호	제 2023 - 14 호
보 고 연 월 일	2023. 6. 12. (제12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2
1. 개요	2
2. 추진 경과	2
I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3
1. 개요	3
2. 추진 경과	3
IV. 제9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변경 대상 범죄군 등에 관하여 접수된 의견 보고	4
1.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	4
2. 회신 의견 종합	5
가. 각급 법원	5
나. 법무부	5
다. 경찰청	7
라. 대한변호사협회	9
마. 대한법무사협회	10
바. 한국여성변호사회	10
사. 산업통상자원부	10

아. 특허청	12
자. 관세청	13
차. 병무청	13
카. 국민권익위원회	13
타. 국무조정실	14
VI. 양형위원장의 경찰청장 면담	15
1. 일시 및 장소	15
2. 참석자	15
3. 면담 내용	15
VII.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16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16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18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54차	2023. 5. 22. 16:00	○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 등 선정 검토

I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양형기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에서 의결된 『관세범죄』 양형기준 및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개 하였음

2. 추진 경과

- 2023. 4. 24. 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에서 관세범죄 양형기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3. 5. 15. 행정안전부의 관보등록시스템에 접속 / 등록 요청
- 2023. 5. 19. 양형기준 관보 게재

(<http://gwanbo.go.kr>)

I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국민에게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최종 의결된 『관세범죄』 양형기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함

2. 추진 경과

- 2023. 5. 12. : 홈페이지 게재 의뢰(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시행일	범죄군	게재 경과
2023.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2023. 6.말 게재

IV. 제9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변경 대상 범죄군 등에 관하여 접수된 의견 보고

1.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

가. 개요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군과 연구·심의가 필요한 양형정책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31개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나. 조회 기간

- 2023. 3. 13. ~ 2023. 4. 13.

다. 의견 접수 기관

- 각급 법원
- 법무부
- 경찰청
-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법무사협회
- 한국여성변호사회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 관세청
- 병무청
- 국민권익위원회
- 국무조정실

라. 회신자료

- 별첨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변경 대상 범죄군 등에 관한 의

2. 회신 의견 종합

가. 각급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사기죄 중 보이스피싱 범죄, 특히 전달책/수거책 등 하위 단계 가담자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전달책/수거책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나, 각급 법원별 처벌의 기준 및 고려하는 양형요소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지역별로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법무부

(1)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법 개정으로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 필요
- 기술유출사건은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이로 인해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그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함
- 범죄자들이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으므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함

(2)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 상향 필요
- 보이스피싱 사기에 적용되는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구간별 권고 형량범위 상향
- '조직적 사기' 유형에서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공공기관·금융기

관을 사칭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 조직적 사기와 경합범 관계인 범죄도 양형기준 신설

(3)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신설

- 상습투약자 양형 강화
- 필로폰, 대마 유통사범 양형 강화
- 대량범 구간 세분화, 양형 강화
-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 등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범죄수단으로 마약류 이용 시 가중

(4) 청소년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신설

- 미성숙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성매매범죄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기준 강화·신설 필요
- 현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처벌수준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각 영역별 형량을 가중, ②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상대 성매수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신설, ③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반복성 등을 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추가 등 양형기준 수정 검토 필요

(5) 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신설

- 무고범죄 양형기준은 2009. 7. 1.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설정, 시행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처벌 수준으로는 무고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벌 강화가 필요하고,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를 기준으로 적정한 형을 도출할 방안 연구 필요

(6) 위증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 위증범죄 양형기준은 2009. 7.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설정, 시행한 후

2017. 4. 유사한 보호법익을 가진 증거인멸죄 양형기준을 추가하였을 뿐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사법절차 강화 및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 위증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필요
-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의 특성에 맞추어 처벌불원, 이종 전과 등 특별예방적 인자들을 배제하거나 영향력을 줄이고(일반양형인자화), 일반예방적 인자들의 발굴(대상범죄의 중대성, 파급성 등) 및 영향력 강화(특별양형인자화)
- 유사 양형인자의 중복 적용 배제(특별양형인자인 자수·자백과 일반양형인자인 진지한 반성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호 중복 적용)

(7)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인자 추가

- 현재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는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어 실무에 적용하거나 구체적 양형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양형인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8)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 양형기준 설정

- 전자장치훼손(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및 피부착자·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에 대하여 일관되고 공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 마련 필요

다. 경찰청

(1)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강화

- 법정형이 동일한 위증, 특수폭행 등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공무집행방해는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낮음. 공권력 확립 및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 (1~8월 → 3~10월)
- 일반가중인자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를 추가하고, 특별가중인자로 '상습범인 경우'를 추가할 필요

(2)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 대마사범 검거인원은 5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고, 재범율도 50% 정도이나, 권고 형량범위는 대마사범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마약류범죄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그 입구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라 불리는 대마사범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 필요
- 대마 흡연 등 행위의 처벌 강도를 높여 마약류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고,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도 2회 사용부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형인자 수정 필요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특별 감경인자의 정의규정에서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정의규정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옆에 '다만 마약류 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라는 단서조항 추가
-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삭제

(3)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 강화

- 피해의 심각성 등 법정형 상향 취지, 피해규모 입증에 곤란한 기술유출 범죄 특성을 반영하여 형량범위 또한 상향할 필요
- 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내부자에 의한 범죄 비율이 높으므로 감경요소로 '내부고발' 포함 필요
-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자료들이 복제가 용이하여 향후 사용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권리자가 당해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를 '영업비밀·산업기술이 파기·회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의 정의규정 중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여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고 반환·폐기된 사실이 명백하여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로 수정

- 특별가중인자인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을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 방산기술보호법상의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범행'으로 수정
- 특별가중인자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정의에 '영업비밀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를 추가하여 거래처·계약처·파견직원 등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4) 전기통신금융사기 양형기준 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동기 역시 '비난받을 만하다'고 보기에 충분함.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하여 사기와 별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여 사기보다 강화된 권고 형량범위 설정 필요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극 가담' 등 감경인자의 적용범위를 축소할 필요

(5)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 딥페이크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향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행위가 상당히 증가,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할 필요

(6)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신설 필요

- 스토킹범죄의 특성 및 중대성을 반영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마련 필요

(7) 기타

- 정보통신망 침입(해킹)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 필요

라. 대한변호사협회

(1)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필요

-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사례가 많이 축적됨
-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법원에 제시할 필요
- 벌금형 양형기준도 설정 필요

(2)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필요

-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연구에서 동물 학대와 폭력 등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됨
- 징역형 및 벌금형 양형기준 필요

(3) 선거범죄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필요

마. 대한법무사협회

- 의견 없음

바. 한국여성변호사회

- 미성년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한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의 파급효과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대화 등)가 신설됨 (2021. 9. 24. 시행)
- 위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양형인자로 아래 사항 고려 필요
 - 감경요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피해자의 적극적·주도적 대화참여(성인 인증이 필요한 대화방 참여 등), 피해가 경미한 경우(대화의 횟수, 대화기간 등) 등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으로 범행,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기간 지속적 또는 반복적 범행 등

사.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독립된 양형기준 신설 필요

- ‘국가적 이익’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기업의 사익’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유출과 동일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가중요소로만 고려하게 된다면 산업기술 유출의 가벌성에 상응하는 양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보호법익, 법정형 등이 상이하야 가벌성 및 처벌 시 고려해야 할 사정들이 상이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기술침해범죄의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와 다른 별도의 양형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형량범위 상향
 -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의 경우 통상의 산업기술보다도 더 엄히 처벌될 수 있도록 유출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양형범위를 두거나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 신설
 - 산업기술침해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한다면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서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을 삭제하고 ‘유출시 국가안전보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에 관한 범행’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산업기술 침해 사건이 대부분 전·현직 직원이 배신적 퇴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신적 퇴사를 통한 기술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배신성이 있는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범행’을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을 단순히 취득한 것을 넘어 사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에는 유출된 기술을 완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유출 및 피해 확대의 가능성이 크고, 그 행위의 가벌성이 훨씬 크므로 ‘취득한 기술을 사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유출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이 침해된 경우에는 감경이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아. 특허청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독립된 양형기준 신설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지식재산권 범죄에서 분리하고, 산업기술 침해 행위 양형기준을 신설하여 독립된 기술유출 범죄군 설정
- 영업비밀 침해범죄 권고 형량 강화
- 영업비밀 침해범죄 양형인자 정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정의규정 수정: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 삭제 또는 '관련 자료가 파기·회수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의 정의규정 수정: '유출된 정보가 반환·폐기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를 추가
 - 내부비리 고발자의 형량을 감경토록 양형인자 신설
 - '계획적·조직적 범행'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확대 및 관련 양형인자 정의규정을 신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정의규정 수정: '경쟁사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도 정의 규정에 포함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영업비밀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자'까지 확대
 -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영업비밀의 유출'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신설
 - '국가·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신설 및 관련 양형인자 정의규정을 신설
- 영업비밀 침해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삭제,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을 주요참작사유로 추가 등

- 특허권 침해범죄 양형기준도 특허의 특성(공개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정비안 적용

자. 관세청

- 기술유출·침해 근절을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한 법 개정의 취지가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형량기준 재설정 필요
- 국내 침해 유형(제1유형)에 영업비밀 무단 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신설 범죄 추가, 국외 침해 유형(제2유형)에 산업기술보호법에 신설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범죄 추가 필요
-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정형을 상향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량범위의 상향이 필요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일반기술 유출 대비 가중 처벌되도록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차. 병무청

- 병역면탈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상실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
- 병역면탈 행위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모방 또는 수법을 전수하여 은밀하게 실행할 수 있는 범죄유형으로 범죄 예방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큼

카.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현재 양형기준 중 일부 범죄군(뇌물, 횡령·배임, 사기, 식품·보건, 증권·금융, 선거, 조세, 배임수증재 등)의 양형기준은 공익신고와 유사한 개념인 ‘내부비리 고발(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을 양형인자로 기술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범죄군 중 ‘내부비리 고발’이 양형인자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군의 양형기

준에 대하여 '내부비리 고발'을 양형인자로 추가할 필요

타. 국무조정실

(1)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 집행유예 선고 마약류 사범에 보호관찰 등 필요적 부과 필요
- 마약류 범죄 형량범위 상향

(2) 보이스피싱 사기 양형기준 강화

- 조직적 사기에 대한 구간별 권고 형량범위 상향
- 조직적 사기에서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 조직적 사기와 경합범 관계인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

※ 항목별 상세내용 [별첨]과 같음

V. 양형위원장의 경찰청장 면담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3. 5. 31. (수) 11:00 ~ 11:30
- 장 소: 양형위원회 위원장실(대법원 1501호)

2. 참석자

- 경찰청: 경찰청장, 기획조정관, 수사기획조정관, 치안상황관리관
- 양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3. 면담 내용

- 제9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대한 경찰청 제출 의견서 관련
- 공무집행방해범죄, 마약범죄 및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VI.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 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3. 05. 15.까지 총 30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3. 2. 2. ~ 2023. 4. 25.(4)	○개별 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2	2023. 2. 5.(1)	○성인지 감수성 및 양형기준을 재조정하여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게 판결하여야 한다는 요청
3	2023. 2. 9. ~2023. 4. 19.(17)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4	2023. 3. 13. ~2023. 4. 13.(5)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
5	2023. 4. 21.(1)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6	2023. 4. 21.(1)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7	2023. 4. 21.(1)	○진지한 반성문 제출 상대방을 법원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3. 5. 15.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10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3. 5. 6.(1)	○ 개별 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2	2023. 5. 11.(1)	○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기준 상향 요청
3	2023. 5. 10. ~ 2023. 5. 15.(8)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국민신문고 게시판)

가.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3. 5. 15.까지 총 16건)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3. 3. 10.(1)	○운전자 폭행근절을 위한 엄격한 양형기준 적용 요청
2	2023. 3. 17. ~ 2023. 3. 27.(3)	○범죄피해자 의견을 고려한 형량 선고 요청
3	2023. 4. 3.(1)	○동물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
4	2023. 4. 9. ~ 2023. 4. 10.(3)	○개별 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5	2023. 4. 10.(1)	○특정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요청
6	2023. 4. 13. ~ 2023. 4. 23.(4)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청
7	2023. 4. 19.(1)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 감형요소로 참작되는데 대한 반대 의견
8	2023. 4. 21.(1)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관련, 반성문 제출 상대방을 법원이 아니라 피해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9	2023. 4. 25.(1)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개별 사건 판결 형량 강화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

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운전자 폭행 사건의 각 개별적인 판결 결과나 선고형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취지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판결 결과나 선고 형량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 범죄 피해자의 의견을 보다 많이 고려해 달라는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6번, 7번,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나.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3. 5. 15. 까지 총 6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3. 4. 24.(1)	○ 피해자 의사를 고려한 판결 요청
2	2023. 5. 6.(1)	○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상향 요청
3	2023. 5. 8.(1)	○ 금융범죄 처벌 강화 요청
4	2023. 5. 12. ~ 2023. 5. 15.(3)	○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기준 상향 요청